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 주택의 설계도서작성 기준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87호]

개정이유

현행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고제도는 설계비 담합 등으로 인해 민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6호]

「주택법」 제2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をも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2. “구성재”라 함은 치수가 명시된 형태로 제작된 건축재료로서 부품·형재·조립품 및 부재 등의 건축용 제작품을 말한다.
3. “구성재의 치수체계”라 함은 구성재의 조합설계시 요구되는 치수체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치수를 말한다.
 - 가. “호칭치수”라 함은 각 구성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치수로서 기준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 나. “제작치수”라 함은 호칭치수에서 구성재 조합시 요구되는 틈을 제외한 치수로서 제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구성재의 목표치수가 된다.
 - 다. “실제치수”라 함은 실제로 제작된 구성재의 치수를 말하며 구성재의 결과치수가 된다.
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

의 차이를 말한다.

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
 - 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 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6. “틈”이라 함은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간의 치수로서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와 그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오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7. “치수조정”이라 함은 생산·설계 및 시공시 건축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모듈정합”이라 함은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치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한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6M·9M·12M·15M·30M 및 60M을 말한다.
 -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M/4 및 M/5을 말한다.
10. “우선치수”라 함은 모듈정합을 목적으로 증대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말한다.

11. “계획모듈”이라 함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된다.
12. “모듈격자”라 함은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격자를 말한다.
13. “격자”라 함은 공간이나 평면에 일정한 치수로 설정된 가상선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격자로 구분된다.
 - 가. “단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단선으로 일정하게 설정되는 격자를 말한다.
 - 나. “복선격자”라 함은 모듈격자의 간격이 복선으로 설정되는 격자를 말하며 연속 복선격자와 불연속 복선격자로 구분된다.
 - 다. “쌍줄격자”라 함은 격자간격이 모듈대와 중립대로 구성되어 모듈대와 중립대가 통합되면 정수배의 모듈치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격자를 말한다.
 - 라. “중립대”라 함은 준거체계속에서 규칙적인 모듈치수의 적용이 중단된 영역을 말한다.
 - 마. “모듈대”라 함은 모듈면 사이에 설정된 모듈공간을 말한다.
 - 바. “모듈면”, “모듈선”이라 함은 건축 모듈정합설계의 기준이 되는 면 및 선을 말한다.
14. “준거체계”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 구성재의 위치와 영역을 지정하는 기준점·기준선 및 기준면에 관한 체계를 말하며,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모듈공간격자와 2차원의 평면을 의미하는 모듈격자로 구분된다.
15. “기준면”이라 함은 구조부위의 이론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16. “면잡기”라 함은 준거체계에서 주요부위의 개념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면잡기로 구분된다.
 - 가. “안목기준면잡기”라 함은 건축구성재로 구획되는 건축공간을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

한다.

나. “중심기준면잡기” 라 함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의 중심간 거리를 모듈치수로 확보하기 위한 기준면을 말한다.

17. “최대한계치수” 라 함은 기준면과 제작면간에 접합이 가능한 최대 이격치수로서 앞서 시공되는 구성재의 기준면내에 설정된다.

18. “구조대” 라 함은 기둥의 주위에 설정되는 기준면사이의 영역으로서 기둥 끝조의 치수와 마감재 치수, 틈을 합한 영역을 말한다.

19. “중간대” 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마감기준면까지를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두께 · 보 높이 및 마감두께 기타 건축설비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20. “천장대” 라 함은 천장하부 기준면에서부터 위층 슬래브 상부 제작면까지의 모듈로 설정한 치수로서 슬래브 두께 및 보 높이, 기타 건축설비 등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모듈 정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KSF 1503(건축모듈정합원칙 및 기준) KSF 1508(건축모듈정합관련 용어)을 준용한다.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도면의 종류와 축적 및 작성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건축재료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방서)

①시방서에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 공법 ·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 공종별로 작성하며,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계산서)

①구조계산서는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단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흙막이등 도서) 지하층의 설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흙막이 등 경사면 안정공법에 관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설계도서를 작성 · 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

제11조(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 150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이하 “벽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 · 복도 · 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 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자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식당·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계단·계단참및발코니의너비
3. 현관·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 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운동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세부기준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활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구성재의 조립기준면설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장이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건축물의 구조내력에관한기준에서 규정하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①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둥 중심간의 치수는 6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3M의 증분치도 사용할 수 있다.

2.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1M의 증분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패치수의 설정 방법은 <별표 6>의 예시와 같다.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보밀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밀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제22조(세부기준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활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구성재의 조립기준면설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장이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1. 총괄표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목록	타이틀 도면 목록표	-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도면부차, 도면번호
개요	설계 개요서	-	설계 및 공사개요, 부대 및 복리시설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적지구,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면적, 견베움, 용적률, 구조, 층수 및 규모, 평형발제내용, 주차장
	면적표 구역표 배치도	1/100 ~ 1/600 1/300 ~ 1/1,200	대지지분별면적, 분할면적, 동별면적, 부대 및 복리시설면적 구역도, 구역표 및 산출근거 축척 및 방위,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결합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역, 용 역, 우물, 배수시설, 우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공사용 기성건축물의 축조위 치, 공사기간중의 도로활용범위, 조경계획, 우물구멍, 스프레이 분리수거용기 위치
	주차계획도	-	방직 주차면적 대비 주차공간 계산표, 옥외 및 지하주차장 도 면, 주차 배치도
	단지조감도	-	단지 전체의 조감도
	안전도	부근현황도 단지역 보행계획도 단지역 보행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1/500 ~ 1/3,000 - 1/500 ~ 1/3,000 -

2. 토목공사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토공사	현장측량도	1/300 ~ 1/1,200	측량도
	택지개발계획 평면도	1/1,200 ~ 1/3,000	방위, 축척, 토지이용계획, 도로망, 지구계 방위, 축척, 도로망, 구배, 도로 및 단지 조성도, 비탈면위치, 구조물표시
	공사계획 평면도	1/300 ~ 1/1,200	대표적인 주변부품 단면도
	대시 종 · 횡 단면도 공동구계획 평면도 공동구공형 단면도	- - -	평면도 단면도
도로 및 포장공사	포장계획 평면도	1/600 ~ 1/1,200	교차점의 간격, 축척 및 방위, 교차점의 평면 곡선반경
	아스팔트 포장 단면도	1/50 ~ 1/300	포장구조, 각층의 두께, 차선품종
	콘크리트 포장 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 1/300 ~ 1/500	포장구조, 각층의 두께, 차선품종 교차로 부근의 우각부 곡선반경, 보도블럭, 횡단구배, 계획고, 축척 및 방위
배수공사	우 · 우수통합계획 평면도	1/300 ~ 1/1,200	시설물배치, 연통배치, 관배치, 관로도, 단지의부의 기준선으로 연결상태, 관구경, 침수경 위치 · 크기 등
	배수유역도	1/600 ~ 1/2,500	도로, 주택상하수, 우 · 우수관 배치, 연통
	우수관로 종단면도 우수관로 횡단면도	1/300 ~ 1/300 -	수배, 단결, 지반고, 토비, 관직고, 연상 연통위치 및 크기
옹벽공사	옹벽계획 평면도	1/300 ~ 1/600	설치위치, 계획 평면도
	옹벽단면도	-	단면도
	옹벽계산도	-	옹벽의 연속적보양, 시적 및 끝부분 표시

3. 조경공사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조경부분	녹지 종합계획도	1/500 ~ 1/3,000	조경계획도, 조경개념도,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시설물배치, 단지내 및 단지의 고지형
	녹지 구역도 및 구역표 조경 평면도 조경수상 총괄표	1/200 ~ 1/2,000 1/200 ~ 1/600 -	구역도, 구역표 및 산출근거, 축척 배치 계획도, 가로수 식재 계획도, 활주녹지 식재 계획도 식재종류, 가로표시, 수종표시, 굴리, 수안, 식재위치, 방정조 경 면적별 식재결면적, 수종별 식재비율
	휴게시설 평면도 휴게시설 배치도	1/30 ~ 1/200 -	공중, 굴리, 민위, 수안, 방위, 축척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구역도	1/100 ~ 1/200	면적 및 산출방법
	놀이터 배치도 및 위치도	-	방위, 축척
	놀이터 평면도	-	간격, 방위, 축척
체육시설	체육시설 배치도	1/600 ~ 1/1,200	시설배치도

4. 건축공사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100 ~ 1/200	각층별 평면, 라식의 용도 및 면적, 기둥 · 벽 · 창문의 위치, 방 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직통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 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 치 및 치수, 라이프라인, 단위세대구획, 건축물의 중심선 및 외 곽선, 출입구의 위치, 방크리, 창문유치 등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
	기준층 평면도	-	-
	지하층 평면도	-	-
	옥상층 평면도	-	-
	단위세대 평면도	1/30 ~ 1/60	기준층차, 중심선치수, 안목치수, 창호크기 · 개질 및 개배방 향, 가구설치위치 및 크기(신발장 · 욕실장 · 주방가구 · 거실장 등), 실명, 세대내 면하는 복도 탈출구 위치 및 개질, 실명용도 라인 위치 및 구배방향, 소화전 · 방수구멍 등의 위치 등
	지하층 코어평면도	-	용벽두께, 방수한계, 트래지, 침수경 등
	1층 코어평면도	-	관리인실, 부속실, 주현관, 진입단말 및 경사로, 우편물수취함, 무차선실 등
	기준층 코어평면도	-	엘리베이터, 규모 및 크기, 방화문 위치, 방화구획 (연화되는 층마다 작성)
옥상층 코어평면도	-	돌방크기, 개질, 마담마갈 · 옥상 수평퍼트 · 루프드레인 위치 및 크기 · 사다리 등	
입면도	지하주좌좌 평면도	-	재료마감, 각종설비(집수관 · 트래지 · 배기설비 등), 주차구획, 경사로 등
	영교환설 · 전기설 · 기계설 평면도	-	가중설비기 위치, 절단구 위치 및 크기
입면도	결면도	1/100 ~ 1/200	외벽 마감재료, 층수 및 층바닥위치, 창호 개구부 해상 및 위치, 외벽시설물(사다리 · 단간 · 경사로 · 용통 · 중 · 관통 및 옥 상돌출물 등
	배면도	-	-
	좌측면도 우측면도	- -	- -
단면도	주단면도	1/30 ~ 1/100	지표면위치 · 기준층차 · 중심선치수 · 안목치수 · 창호 및 개 구부위치, 실명, 바닥마감, 층고 및 천장고 최고높이
	횡단면도	1/100 ~ 1/200	-
	종단면도	-	-
	코어 단면도 계단 단면도	1/40 ~ 1/50 -	- -
구조도	기둥 · 보 일람표 (필요시 용벽일람표)	1/30 ~ 1/50	단부 및 중앙부에서의 보의 크기, 배근형식(상단 및 하단), 전 단부상근의 종류 및 간격, 기둥의 크기, 주근의 배치형태 및 개수, 대근의 종류 및 간격
	주심도 (이중스캐일 사용)	1/30 ~ 1/200	기둥 및 벽체의 정확한 위치치기, 기둥 또는 수평 · 수직 단면 의 변화관계 상세 표시
마감상세도	실내 · 외 재료 마감표	-	천장 · 벽 · 바닥이 · 바닥부위의 바탕 및 마감
창호도	창호 일람표	1/30 ~ 1/60	보통치수, 개구부의 수, 재질치수, 변형, 적용위치, 부속물등의 제일 및 규격, 개배방향, 유리종류 및 두께

5. 건축설비공사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지하 저수조	평면도	1/30 ~ 1/200	각 구조물의 외곽선 · 벽체두께, 저수조 내 · 외부 경사, 환기 구, 연홍 등
	단면도	-	구조물의 크기(높이 · 길이) 및 단면, 단면치수, 내부야간제
우수 · 분뇨정화조	평면도	1/30 ~ 1/200	각 시설물의 외곽선 · 벽체두께 · 개구부 등
	단면도	-	시설물의 바닥두께 및 높이 수위선 · 유티구 등
	상세도	-	연홍, 단간 등
	처리계통도	-	우수계통, 오니계통, 공기계통, 주요장비 등
옥외 급수공사	상수도 계획평면도	1/600 ~ 1/1,200	축척, 방위, 분기위치, 규격 등
	고가수조도 (유사분명도)	평면도 1/50 ~ 1/200 입면도 - 단면도 1/30 ~ 1/100	수조의 규격 · 형상 등 구조물의 형상 · 높이 · 마감 등 각부 단면의 치수, 내부야간제
기계설비도 (옥내)	급수 · 급탕배관 계통도	-	공급계통 · 공급배관 · 배관경 표시 · 밸브유치서 · 옥상탱크 고 설치높이
	단위세대 워밍배관 평면도	1/30 ~ 1/60	워밍배관 위치 및 수도꼭지 위치, 배관경, 배기설비, 방온수 계통 기 위치
전기설비	전력간선 계통도	1/50 ~ 1/200	주 분전실에서 각세대 분전반 사이의 간선계통 및 연결 보안등 배선도 (옥내 · 옥외)
	보안등 배선도 (옥내 · 옥외) 전기 부하용량 계산표	- 1/30 ~ 1/100	- 용량 산출근거

4. 건축설비공사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지하 지수조	철근 배근도 각부 상세도	1/30~1/200	철근의 배근위치, 간격, 크기 한기구, 사다리, 침수형
오수·폐노경화조	철근 배근도	1/30~1/200	배근위치, 배근간격, 철근규격 등
옥외 급수공사	단지내 간선의 분기 배관도 구조물과의 연결부위 시공도 구조물과의 인입분기 배관 소회전·급수설비준도	1/10~1/100	종류별 분기상세도 구조물 시공도, 오배수 배관 통과부위 시공도, 고저차별 시공도 종류별 인입분기 상세도 소회전 평면도 및 단면도, 급수탑 단면도
고가수조도 (유상탈병크)	각부 단면 상세도 물탱크 벽체 배근도 동탱크 스티브 배근도 기초 배근도	1/20~1/60	출입구, 사다리 등 배근도
기계설비도 (속내)	난방배관 계통도	-	난방배관구획 또는 유량조절기거설치, 난방배관 공급배관, 배관경표시, 펌프 위치표시
	단위배관 난방배관 평면도	1/30~1/60	난방공로의 배관경·배관경·미리표시, 열량계·유량계·온도밸브위치
	지하층 난방배관 평면도	1/100~1/200	난방배관 관로, 배관표시, 구조물 관통관계
	1층 난방배관 평면도	-	-
	기본층 난방배관 평면도	-	-
	옥상층 난방배관 평면도	-	-
	오수·배수배관 계통도	-	배관계통, 배출계통, 배관경표시
	지하층 급수·급탕 평면도	1/100~1/200	급수, 급탕관로, 배관경, 구조물관통 관계
	지하층 오배수관 평면도	1/100~1/200	급수, 급탕관로, 배관경, 구조물관통 관계
	1층 오수관 평면도	-	-
	기본층 급수·급탕 평면도	-	-
	기본층 오수배관 평면도	-	-
	옥상 급수·급탕·오수배관 평면도	-	소방시설물 배관계통 및 시설물 표시
	소화배관 계통도	-	소방시설물 설치표시
	단위배관 소화배관 평면도	1/30~1/60	소방시설물 배관계통·시설물 설치표시
	지하층·1층 소화배관 평면도	1/100~1/200	-
	기본층·옥상층 소화배관 평면도	-	-
	동별가스배관 입상계통도	-	각종기기 위치, 배관경
	단위배관가스 평면도	-	계량기 위치, 배관경
	단위배관 보일러실 평면도 (개별난방일 경우)	1/10~1/20	장비배치, 급배기시설, 연로계통
옥상물탱크 제작 설치 상세도	1/5~1/10	제작 상세도	
E.L.L.기계설 배기팬설치 상세도	-	설치 상세도	
지하층 배관지지 상세도	-	상세도	
방열기 설치 상세도	1/5~1/10	상세도	
온도조절기 설치 상세도	-	설치 상세도	
열량계 설치 상세도	-	-	
난방용 온수 유량계 설치 상세도	-	-	
온수분배기 배수 상세도	-	-	
온수분배기 주위 배관 상세도	-	-	
동관 절할 상세도	-	-	
용접이음 상세도	-	-	
배관발열매 및 관통편지 상세도	-	-	
덕트내 펌프설치 상세도	-	-	
계량기할 설치 상세도	-	-	
통기관 설치 상세도	-	-	
소액구 설치 상세도	-	-	
P.V.C관 및 수철관 연결 상세도	-	-	
기계설비도 (속내)	오·배수 입상관 소재구 및 옥외연결 상세도	1/5~1/10	설치 상세도
	배기그릴 설치도 및 상세도	-	-
	배기팬설치 상세도	-	-
	화이어일방 설치 상세도	-	-
	옥상 P.V.C 배관 보존 상세도	-	-
	배수분배기 설치 상세도	-	-
	온도계·인원계 설치 상세도	-	-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	-
	인베트 플레이트 상세도	-	-
	왕팬크 설치 상세도	-	-
옥상 통기관 상세도	-	-	
배관 및 보존설치 상세도	-	-	
기계설비도 (속외)	옥외급수구 단면도	1/5~1/10	난방, 급수, 급탕, 소화의 관로 등
	옥외급수구 난방배관 평면도	1/300~1/600	보일러실, 중간기계실에서 각층에 난방공급 및 환수를 위한 배관관로 및 분기위치, 담당 기계설비 표시
	옥외급수구 급수배관 평면도	-	단지입구 사수 관로로부터 분기위치 및 관경, 펌프설치 위치, 펌프실 위치로부터 각층에 급수공급 관로 및 관경표시
기계설비도 (속외)	옥외급수구 소화배관 평면도	1/300~1/600	옥내소화전 관로 및 관경, 옥내스프링클러 관로 및 관경, 기타 소방용에서 경하고 있는 소화관로 및 관경표시
	옥외가스배관 평면도 우·오수배관 계통도	-	각종기기, 펌프의 위치표시, 배관경 배관계통, 배관의 재질, 규격, 배관위치, 건축배관 관계 등
기계설비도 (보일러실)	장비일람표	-	기계설비 장비일람표
	보일러실 배관 계통도 중간기계설 배관 계통도 중간기계설 장비 배치도 필요실 급수배관 평면도 필요실 소화배관 평면도 자동제어 계통도	-	기계설비 전체구성 및 운영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표시 기계설비 전체구성 및 운영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표시 장비 배치도 급수배관, 펌프구설, 배열, 관경 표시 소화배관, 소화펌프구설·배열, 관경 표시 기계설비 전체구성 및 운영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표시
기계설비 상세도	옥내소화전 상세도 옥외소화전 상세도 연결 급수관 상세도	1/5~1/10	설치 상세도

구분	작성도서	축척	작성내용
기계설비 상세도	자동화전 소화용구 설치 상세도	-	-
	방수용 기구할 설치 상세도	-	-
	정기구 방수구할 설치 상세도	-	-
	담구 방수구할 설치 상세도	-	-
	시험밸브 상세도	-	-
	스트립밸브 설치 상세도	-	-
	옥내소화전 검압 밸브 상세도	-	-
	담방배관 배전도	1/30~1/60	조방기구·스위치·콘센트·세탁분전반 설치위치 및 배치
	공용부 회로 계통도	-	계단, 복도·지하층 등 전등 및 전열회로 계통
	지하층 전력간선 및 전등배전도	1/100~1/200	전력간선: 주분전반에서 각 세대분전반 간의 배관배선 전등·전열: 지하층 전등·전열설치, 배관배선 -1층 공용부분 전등·전열설치위치 및 배선 -각세대 분전반·계량기할 설치위치 및 배선
1층 전력간선 및 전등배전도	-	-	
기본층 전력간선 및 전등배전도	1/100~1/200	-기본층 공용부분 전등·전열 설치위치 및 배선 -계량기할 설치위치 및 배선	
지하층 전력간선 및 전등배전도	-	-동력분전반 설치위치 및 배선 -비회선 설치위치 및 배선	
전력 및 통신인입 제어배전도	1/300~1/600	-전력통신 인입위치 및 배관배선, 맨홀 및 수공 -개폐기 및 맨입기 배치 -옥외 스위치 배관·배선	
수전반, 배전반·변압기할 설치 상세도	1/10~1/50	수전반·배전반·변압기할 등 설치상세	
변전실 설치 및 제어 배전도	1/30~1/50	각종장치 배선·조차·고장상태 감시, 계측 배관배선	
중앙감시 제어인람표	-	관할별 조작 및 감시, 계측·민원기 수량	
보일러실 동력배전도	1/100~1/200	동력관 및 보일러위치, 배관·배선	
보일러실 배선 일람표	-	장비명, 보일러용량, 대수, 배관, 배선상시·예비 구분, 시공방법	
공동구내 전력 간선계통도	1/200~1/600	구간별 마더, 지하저수조·중간기계설 등 배선	
중간기계설 전등 및 동력배전도	1/20~1/50	동력관 및 모더위치·배관배선 등	
지하저수조 동력관 일람표	-	단선설정도·모더용량·직단기·변류기·콘센트·규격·상시 및 예비구분	
전기설비	지하저수조 동력 및 전등 배선도	-	동력관 및 모더위치·배관배선 등
	변전실 단선설정도	-	수명전설비, 배선설비·방열설비 기기 규격 및 계통
	변전실 배선도	1/20~1/50	특고단·변압기할, 작업할 발진기 및 운전원 위치, 특고인입 배관배선, 작업할과 발진기할 배관배선
	중간기계설 동력관 일람표	-	단선설정도, 모더용량, 직단기·변류기·콘센트·규격, 상시 및 예비구분
	모더일람표 동력관 일람표	-	-
	세대할 배선기구할 설치 상세도	-	각 세대할 설치하는 배선 기구할 등의 설치 상세도
	계량기할 상세도	-	-
	주 분전반 및 행자설치 상세도	-	-
	전기실 상세도	-	-
	문드라 자동회로도 및 관통배관도	-	-
	문드라 전압할 상세도	-	-
	발진기 설치 상세도	1/20~1/50	평면도, 단면도, 설치방법
	중앙감시 그래픽 판넬 상세도	-	각종상시 계통도·회로계통·전력계통·송장기
	공동구 관할 설치 상세도	1/20~1/50	구간별 수직·수평 할일 및 고장회차,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규격
	중간기계설 단면 상세도	-	중간기계설 평면·측면도
	공동구 단면 상세도	-	지하저수조, 케이블트레이, 덕트, 케이블, 전등, 콘센트 설치도 등
	유니트 상세도	1/20~1/50	상세도
	동력관 상세도	-	동력관 및 모더 위치 등
	공동구 지지기구 상세도	-	수직·수평브래킷, 케이블트레이, 덕트 및 부속류 등
	타파기 및 전력 인입용 상세도	1/10~1/30	타파기 및 전력 배선도, 관통상세, 외부관통 스티브 상세 등
발전기 기초 및 연로배관 상세도	-	기초 및 연로배관	
발전인입 상세도	-	평면도, 측면도	
공통 피뢰침 상세도	-	상세도	
감시시험 단차할 및 모더배관지지 상세도	-	감시시험 단차할 및 설치상세, 모더배관 지지상세 등	
옥외 보안등 설치 상세도	-	기초·등주·등기구·안경기설치 상세	
통신·방송·화재 경보설비	유도등·유도표지 상세도(각종등)	-	소방설비 배관배선
	TV공청안테나 및 피뢰침 설치 상세도	1/100~1/200	TV공청안테나와 피뢰침 설치 상세
	옥외용 스위치 상세도	1/20~1/50	스피커외형도, 스피커지지대도 상세, 배선인출 방법
	화재경보설비 계통도	-	화재경보설비 입상
	유도등·유도표지 계통도	-	각종의 유도등 설비 계통표기
	화재설비 계통도	1/100~1/300	소방설비 배선배관
	(지하층, 1층, 기본층, 지중층)	-	-
	인내선 배선도	-	배선도
	유도등·유도표지 상세도	-	-
	전화·TV시청·인터폰·방송시설 계통도	-	배관배선 입상계통
(지하층, 1층, 기본층, 지중층)	-	-	
공동구내 인버터 및 방송계통도	1/300~1/600	구간별 방송·인터폰·인덕션 배선	
공동구내 배선 및 송장기 감시 계통도	-	구간별 화재감시, 소화·소경기 감시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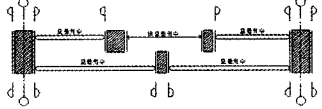
【별표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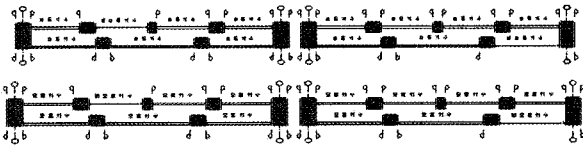
1. "1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2. "2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3. "3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별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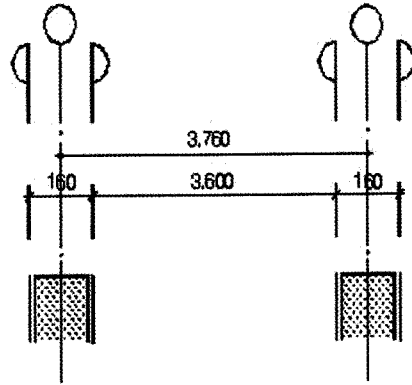
도면표시방법

구분	내용	사용기호	
치수 기준선	중심선	- 구조체의 구조계산, 면적, 견적시 기준으로 사용	
	모듈대 기준선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치수일 경우 사용	
	조절대 기준선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치수일 경우 사용	
	보조 기준선	-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거리로 표시되며, 구성재의 위치 및 영역을 지정	
	비모듈대 기준선	- 기준선으로부터 비모듈 치수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건축구성재를 조합할 경우 사용하는 기준선	
	연속 치수	-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간격을 동일 직선상에서 단계적으로 합한 치수를 표시하여 부정확한 치수계산을 최소화시킴	
위치 기준선	- 시공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현장 먹줄치기의 기준 등으로 활용		
공간 대	모듈대	- 모듈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의 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비모듈 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의 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모듈과 비모듈 치수가 인접할 경우의 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비모듈 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의 비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모듈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의 비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모듈과 비모듈 치수가 인접할 경우의 비모듈대 표시	
	비모듈대	- 상호재	
모듈화된 건축구성재	- 기타부품 · 단위부품 : 간막이벽체, 바닥판, 천장판 등 · 조립부품 : 수납벽체, 조립식욕실, 조립식 파티프리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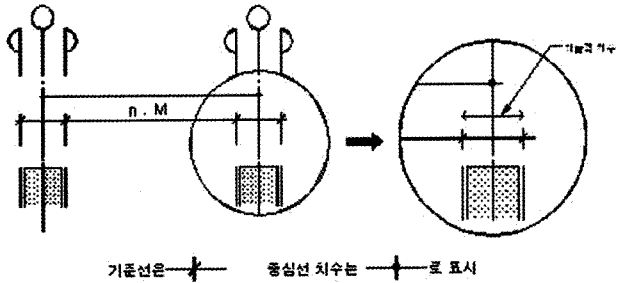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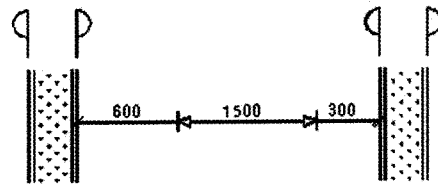
1. 치수기입 및 기준선 표기



2. 기준선과 중심선의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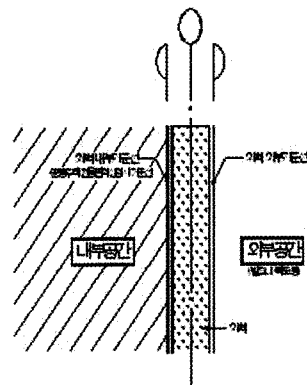


3. 상호 모듈치수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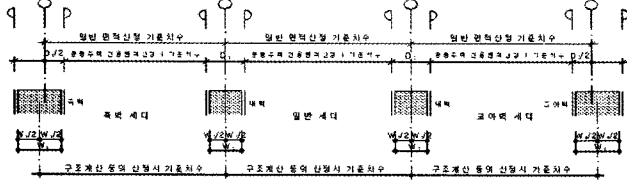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전·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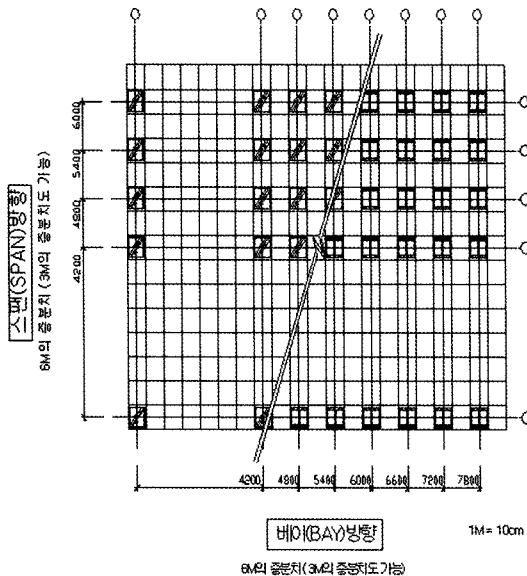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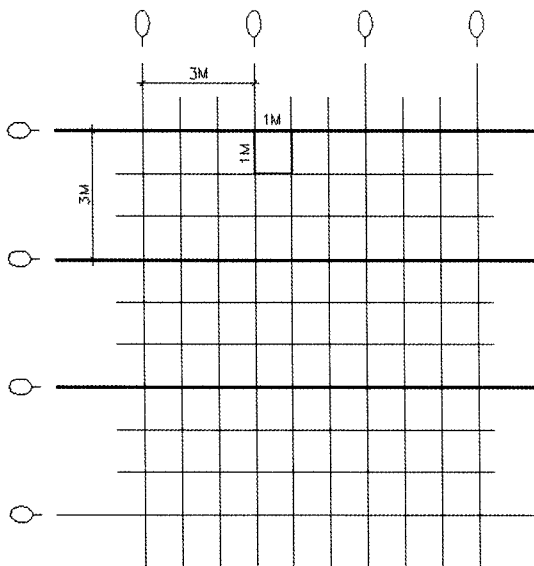
【별표6】

구조계획 및 수평계획모듈 등 설정방법(제20조 관련)

- 구조계획모듈 설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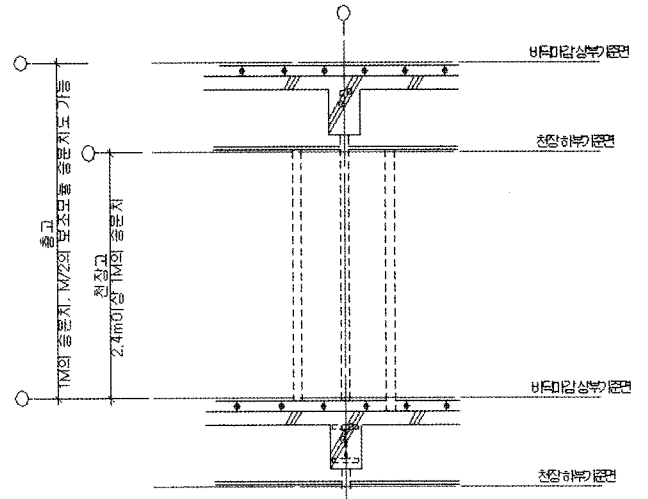
- 수평계획모듈 설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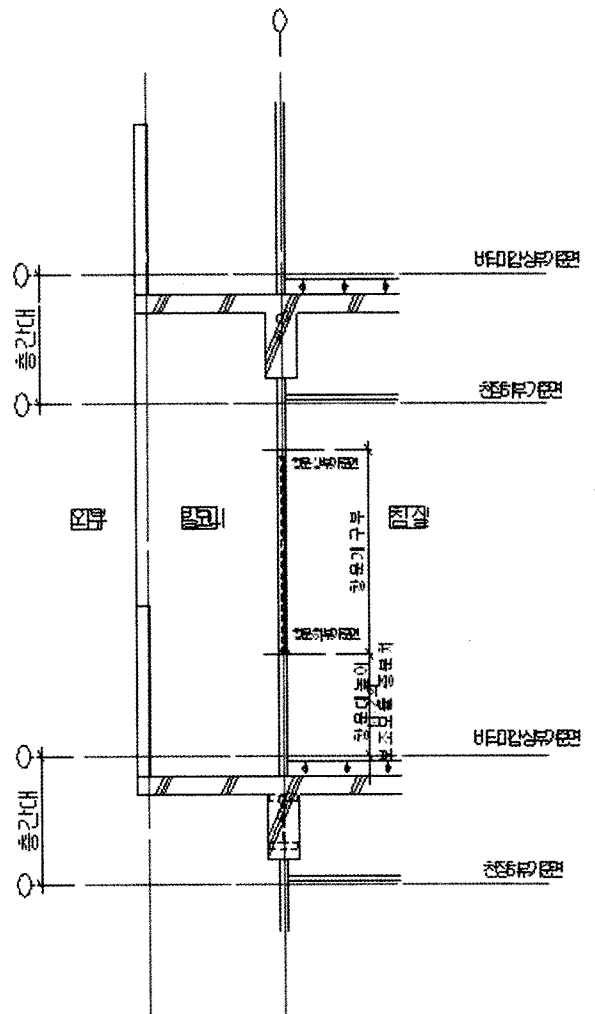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

-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



-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개 정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중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받는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도록 개정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법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시행일

공포한 날(09.2.4)로부터 시행함.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사 제 ②·③ (생략)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생략)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현 행	개 정 안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⑮ (생략)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2. (현행과 같음)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⑧ ~ ⑮ (현행과 같음) 〈삭 제〉